

[서식 예]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죄

고 소 장

고 소 인 O O (주민등록번호 111111-1111111) OO시 OO구 OO길 OO(전화번호 010-0000-0000)

피고소인 △ △ △(주민등록번호 111111-1111111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전화번호 010-0000-0000)

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같이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으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사 실

- 1.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○년간 사귀어 오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입니다.
- 2. 피고소인은 대학에 다니며 고학을 하였는데, 고소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피고소인의 하숙비와 책값, 등록비 등을 대주었습니다.
- 3. 피고소인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○○물산에 취직을 하였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왠지 모르게 저를 만나는 것을 꺼리며 무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고 하였더니 피고소인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만남을 반대하시면서 집안끼리 혼담이 오고간 상대편 처녀를 몇 번 만나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.
- 4.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'부모님들이 반대하시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 끼리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'며 살림을 차리자고



졸랐었는데 지난 20○○. ○. ○. 늦은 밤에 피고소인은 지방에 잠시 내려가 바람이나 쐬고 오자하여 피고소인을 따라 나섰고, 피고소인은 ○○ 온천으로 내려가 여관을 잡고 들어간 후 맥주를 시켜 연거푸 마시더니 "우리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다. 우리 함께 죽고 저 세상에 가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하자"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.

- 5. 이에 고소인도 감정이 복받쳐 먹지 못하는 술을 함께 마시고 피고소인의 말에 동의하여 피고소인과 함께 피고소인이 준비해온 박카스 병의 극약을 마셨습니다.
- 6. 고소인은 다음날인 ○. ○. 여관 종업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위를 세척해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걱정되어 그 상태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소인은 제가 사경을 헤매던 ○. ○. ○○:○○경 여관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.
- 7. 결국 고소인이 싫어진 피고소인이 동반자살 하자고 속여 피고소인은 박카스를 마시고 고소인에게는 극약을 먹여 자살로 위장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.
- 8. ○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놨더니 위와 같이 간교한 방법으로 고소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파렴치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라며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- 1. 피고소인과 함께 마신 박카스 병 2개
- 2.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

 20○○년
 ○월
 ○일

 위고소인
 ○
 ○
 ○
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25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제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제253, 제254조
범죄성립 요 건	사람을 살해하려고 실행에 착수한 때		
형 량	·사형, 무기,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·미수범의 형은 기수범 보다 감경할 수 있음(형법 25조2항)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 ○ 근거 : 검찰청법 제10조 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○ 재정신청) 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 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○ (헌법소원) 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제69조)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제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제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